

OFTA (홍콩이동통신인증)

1. 개요

<p>■ 정의</p>	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홍콩통신규제기관)
<p>■ 개요</p>	제품에 따라서 강제인증(Compulsory Certification Scheme, CCS)과 자율인증(Voluntary Certification Scheme, VCS)으로 분류된다.
<p>■ 인증기관</p>	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OFTA) http://www.ofta.gov.hk/
<p>■ 대상품목</p>	통신장비
<p>■ 적용국가</p>	Hong Kong
<p>■ 적용규격</p>	HKTEC (Hong Kong Telecommunications Equipment Evaluation and Certifications and Certification) 기술기준
<p>■ 기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한 품목이라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강제 또는 자율인증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특정 주파수대역 범위 밖에서 이용되는 무선전화 또는, 특정 walkie talkie의 경우 수출은 합법이나 홍콩 내에서의 이용은 불법일수 있다. 기술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기기의 소지 또는 이용하는 경우 최대 5만 달러의 벌금과 2년간의 금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 라벨링은 자율적으로 부착할 수 있다.

2. 인증기관

1993년 1월에 설립된, OFTA는 홍콩 내 통신 산업의 규제를 책임지고 있다. OFTA의 주 업무는 무선통신서비스의 경제적, 기술적 규제와 통신과 무선주파수 스펙트럼분야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시행하는 것이다. 지역 내 인증기관(LCB, Local Certification Body) 4개가 홍콩에, 외국 인증기관(FCB, Foreign Certification Body) 1개가 캐나다에 소재하고 있다.

3. 대상품목

CPE를 포함한 통신장비이며 강제인증품목과 자율인증품목의 목록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www.ofta.gov.hk)

4. 인증절차

해당 CB는 제조업자가 제출한 샘플을 관련된 HKTA의 기술규격에 따라 시험하거나 필요한 시험을 계획할 수 있다. 대안으로는 RTA 기관이 제공하는 제품의 시험성적서와 관련 정보를 검증하여 인증을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TA와 약정하거나 승인받은 다른 기관에 의해 HKTA 관련규격에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CB는 시험성적서를 검증한 후에 인증을 부여할 수 있다.

https://apps.ofta.gov.hk/apps/esubmission/tranship/pre_apply.asp 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 인증마크



6. Contact

Senior Telecommunications Engineer, Standards Section,
Office of the Telecommunications Authority,
29/F Wu Chung House, 213 Queen's Road East,
Wanchai, Hong Kong

- 홈페이지: www.ofta.gov.hk
- Tel: (852) 2961 6388 / Fax: (852) 2838 5004
- E-mail: standars@ofta.gov.hk